

19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

심 사 보 고 서

1992. 12. 10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24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2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(92. 12. 10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꺾 소 득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'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'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총액 203,823천원
 - 지방의회 선거관련 경비 68,215천원
 - 불법선거 단속장비 구입비 550천원
 -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13,845천원
 - 재해복구비 121,213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 백 수)

- 지방의회 선거비 선관위 위탁금 6,821만 5,000원과 선거법 위반행위 기동단속반 장비구입비 55만원은 의회개원 이전에 지출하였으므로 심사에서 제외
- 지방의회 개원이후 지출내역
 - 가.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13, 845천원

(’91 전국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추진시 입력프로그램 추가시달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)

나. 재해복구비121,213천원

○ ’91. 7. 15 글래디스 호우시 재해 복구사업비

1) 하단동 502번지 일원 저지대 침수해소47,769천원

2) 괴정3동 옥천국교 주변 대로 침수해소43,519천원

3) 하단동 605번지 도로변 침수해소14,170천원

4) 하단동 낙동로 법면 복구15,755천원

○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바,

○ 주민등록 전산 인부임 및 재해복구 사업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라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습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 승인 의결